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

현지법인 내용변경  자(손자)회사 설립·증액·청산  기타

외국환은행장 귀하 20 . . . .

신고인 상호 또는 성명 (인)  
사업자(주민) 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전화  
(담당자 직성명 : )

변경대상 현지법인 명  
현지법인 최초신고번호 신고금액

아래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을 신고합니다.

1. 변경 사항	
2. 변경 사유 (요약)	

붙임서류 : 1. 당초 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자회사 설립시는 자회사 사업계획서 4. 기타 내용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20 . . . .)과 관련됨.

신고번호	
신고일자	20 . .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고기관 (인)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정은행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특히,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변경·청산도 내용변경 신고 대상에 포함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후 보고할 수 있음
  - 1)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투자자의 합병·분할에 의한 경우 포함)
  - 2)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3)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중액투자자는 내용변경신고대상이 아닌 신규신고 대상임
4. 국내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이 국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사본이 기획재정부 앞으로 보고됨
5.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내용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